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일 시 : 2017. 3. 2 (목) / 14:00~17:30

장 소 :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1

주 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후 원 | 보건복지부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일 시 : 2017. 3. 2 (목) / 14:00~17:30

장 소 :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1

주 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후 원 |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연 자
~14:00	세미나 등록	
14:00~14:10	인사말	김덕중 원장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14:10~14:20	축사	오상윤 팀장 (보건복지부 화장품 TF팀)
14:30~15:00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및 리스크 점검	박승찬 소장 (중국경영연구소)
15:00~15:40	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해관 통관 및 리스크 점검	윤정하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15:40~16:20	중국 화장품 시장 변화 및 대응 방안	김형열 대표이사 (중국한아(항주)화장품)
16:20~16:30	Break time	
16:30~17:30	화장품 중국수출확대를 위한 실전 오픈토크쇼	연자 전원

목 차

1.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및 리스크 점검	09
박승찬 소장 (중국경영연구소)	
2. 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 해관 통관 및 리스크 점검	35
윤정하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3. 중국 화장품 시장 변화 및 대응 방안	65
김형열 대표이사 (중국한아(항주)화장품)	

01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및 리스크 점검

박승찬 소장
(중국경영연구소)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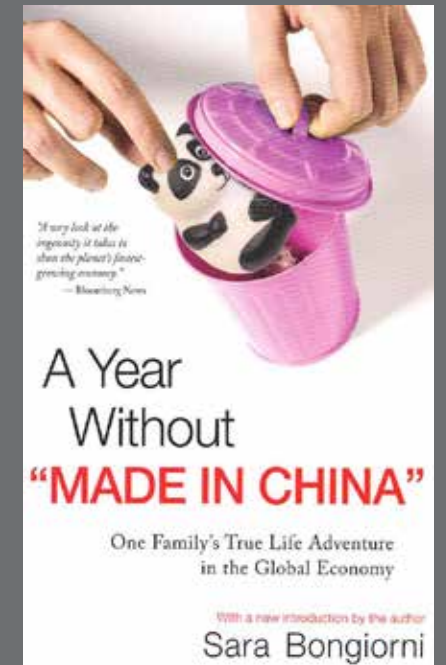
화장품 중국수출 주요이슈 및 리스크 점검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 교수
경영학박사 박승찬

들어가며...

1. 중국정부의 화장품 규제?
2. 중국의 K-beauty 정책 변화와 주요 이슈
3.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접근법



3

들어가며...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
단위:만달러



한국산 화장품,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2위"

- 세계 2위 규모
- 연평균 10% 성장세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프랑스	9억 2146만	25
2	한국	6억 5648만	18
3	일본	5억 4064만	14
4	미국	5억 3744만	14
5	영국	1억 7923만	5

※ 출처: 중국세관통계자료망, 2015.11



2016년 화장품 주요 수출 국가
-전체 수출액 41억 8,334만 달러

1. 중국(15억 7천만 달러, 37.5%)
2. 홍콩(12억 5천만 달러)
3. 미국 (3만 47만 달러)

* 중국 + 홍콩 = 67.4%

강의 경력

-다수의 정부초청 강의
-북경, 상해, 산둥, 옹콩 등
중국투자기업협회 초청강의
-삼성전자, 현대 계열사, 롯데
두산, KT, CJ, LG 등 100 여
차례 기업대상 중국진출
전략 강의 진행



- 중국 清華大 경영학 박사 (칭화대 한국 총 동문회장)
- 전) 주중한국대사관 경제통상전문관/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3,500여 개 중국진출 지원)
- 전) 미국 Duke university 차이나 마케팅 강의교수
- 현)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청 중국시장 전문위원
- 현) 코트라 한중 FTA 전문 컨설턴트
- 현) 용인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중국학과 교수
- 현)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1. 중국정부의 화장품 규제?

中 당국, "따이공은 밀수"...한국 화장품 규제 신호탄
현지 진출 못한 중소브랜드 다각 예상...국산 브랜드 견제 신호탄 우려 높아

한국 자외선 차단제 중국서 회수...화장품 업계 '좌불안석'

중국 매체들 한국화장품 부정적 보도...품질과 유통문제 제기
중국 진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난립...대한화장품협회의 업계 자율검조 역할 가져야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자국기업엔 화끈하게, 외국기업엔 간간하게...노골적 차별 규제

한국 대중 수출비중 26%...화장품 등 피해 잇따라

날개 꺾인 화장품株, 중국발 규제에 '일격'

5

1. 중국정부의 화장품 규제 vs 합법 ?



6

세계 비관세 장벽 주요 국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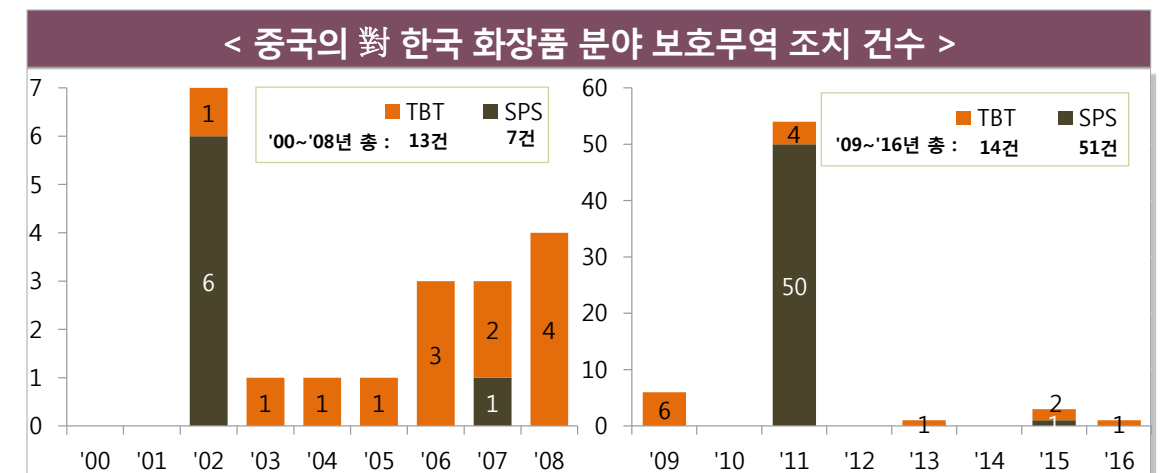


화장품 분야의 보호무역 조치

●(화장품) 2011년 SPS가 사상 최대치 기록

- '00~'16년(8월까지 누적) 동안 화장품 분야에서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총 85건 정도
- '08년 이후에는 '11년 수입화장품 규제에 따라 당해 년도 SPS가 급증했으나 이후 미미

* 최근 들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타이공 및 물류 등 불법 수입에 대해 적극적 대응



식약 분야의 통관거부 사례



• 식약분야 중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가 다수

- '12~'15년 누적기준, 식약 분야에서 중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는 총 462건에 이릅니다.
- 한편, 중국의 통관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와 라벨/포장 불합격이 전체의 75%에 달함
- * 2016년에는 화장품에 대한 통관 거부 사례가 급증 (contact point 최대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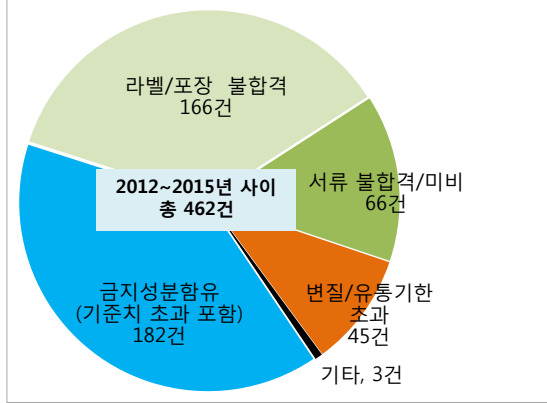
중국 정부 '파이공 규제'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 세관당국 '밀수'로 규정 국내 중소기업 타격 전망



자료 : Trade-NAVI 자료로 재가공 (2012년부터 데이터 열람가능).
주1. 식품은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한 기준임.
주2. 기타제품에는 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포함함.

< 對 한국 식품/화장품 통관거부 사유 >



2. 중국 화장품 정책변화와 주요 이슈

1)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히 제한

化妆品安全技术规范

Safety and Technical Standards for Cosmetics



□ 전문 요약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약칭<<기술규범>>)은 최초 위생부에서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2007년판)이며, 이를 줄여 <<화생규범>>의 개정판이라고 함.
- 2015년 11월 화장품표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쳐,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이를 발표함.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기술규범>>(2015년판)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개요, 범위, 전문용어해석, 화장품안전통용요구.
- 제2장: 화장품사용금지물질(1388개) 및 사용량제한물질(47개).
- 제3장: 화장품안전원료(순용 방부제51개, 순용 자외선 차단제 27개, 순용 착색제 157개, 순용 염색제 25개).
- 제4장: 미화학 검사방법 수록(77개).
- 제5장: 미생물 검사방법 수록(6개).
- 제6장: 독리학 검사방법 수록(16개).
- 제7장: 인체 안전성 검사방법 수록(2개).
- 제8장: 인체 효능평가 검사방법 수록(3개).
- 주요 수정 사항
- ① 명사와 전문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함.
명사와 전문용어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관련된 개념과 내포된 의미를 명확히 함.
- ② 화장품안전기술통용요구사항을 세분화 함.
화장품 중 중금속 및 안전성위험물질평가에 의거하여, 납의 제한치는 40mg/kg에서 10mg/kg으로 조정; 비소의 제한치는 10mg/kg에서 2mg/kg으로 조정; 카드뮴의 제한치를 5mg/kg로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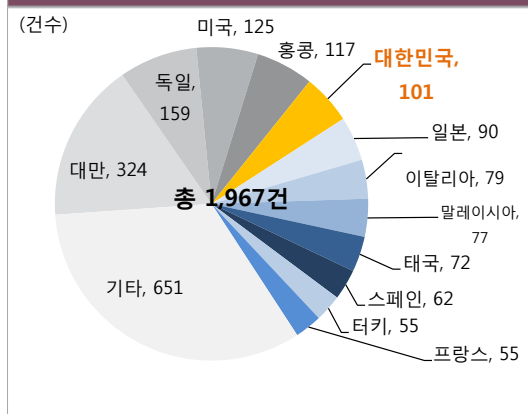
(참고) 중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2015년)



• 한국은 중국의 상위 5번째 통관거부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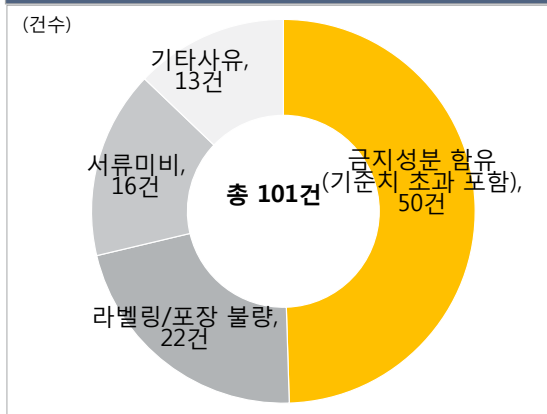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임
- 對 한국 통관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50건), 라벨링/포장 불량(22건)이 대부분임
- * 2016년 들어 사드 등 정치외교적 이슈로 인해 통관거부 사례 급증

< 중국의 국가별 통관거부 (15년) >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재구성.
주 : 한국의 5대 수출국 대상임.

< 중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사유 (15년) >



자료 : WTO I-TIP 자료로 계산.
주 : TBT, SPS,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수량제한, 반덤핑 등 전체임.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1. 총 556페이지 분량

2. 사용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 규범(2007년 버전) 보다 133개 추가

- 사용제한 성분은 47개로 1개 추가

3. 화장품 금지 및 제한 검사 방법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와 짐.

-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검사법 8개 등 추가

- 이미 중국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는 제외

4. 2016년 12월 1일 이전 CFDA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 중국 내 유통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규정에 맞게 인증변경을 해야 함.



2) 중국 화장품 위생감독관리조례



2016化妆品卫生监督条例全文解读

- 향후 지속적인 <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조례> 수정 가능성
 - 중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감독 조례를 수정해 미백화장품을 '비특수' 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
 - 주름개선 화장품의 재분류 검토
- 수입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및 유효성 자료 추가 요구
 - 안전성 자료의 경우 미생물, 중금속, 메탄올, 호르몬, 피부독성 등 총 19가지, 한국의 경우 독성, 피부자극 등 7가지에 비해 훨씬 까다로움.
 - 유효성 자료의 경우 인체패치, 인체시용, 자외선 차단시험 등 3가지
- 화장품 위생허가 의무화
 - 립스틱의 경우 색깔 별로 CFDA 받아야 함.
 - 역직구의 경우도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경쟁력 상실 (과거 100위안이 내년부터 147위안 약 50% 상승)

13

수입 비특수 화장품 상해 포동신구 내 등록제 이슈



특수 용도 화장품의 개념(9종류)

구분	함의
육발(育发) 화장품	모발의 성장, 탈모와 단모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염발(染发) 화장품	모발 색상을 변경하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탕발(烫发) 화장품	모발의 굴곡을 주며 안정적으로 유지·변화시켜주는 화장품
탈모(脱毛) 화장품	체모를 감소, 제거하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미유(美乳) 화장품	유방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건미(健美) 화장품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취(除臭) 화장품	체취 제거에 사용하는 화장품
거반(祛斑)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 침착을 경감하는 화장품
방쇄(防晒) 화장품	자외선 흡수작용, 일소로 인한 피부손상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수입 비특수 화장품 상해 포동신구 내 등록제 이슈



중국 화장품 관련 관리감독 부서

보건식품화장품감독관리 司

화장품위생허가관리
화장품위생허가규범
화장품위생기준·기술규범
화장품 新 원료의 사용·국산특수용도화
장품의 생산·화장품 최초수입 심의
화장품안전성평가
화장품위생감독관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

광고관리감독 司

화장품 광고관리

지방 수출입검역국역국
(C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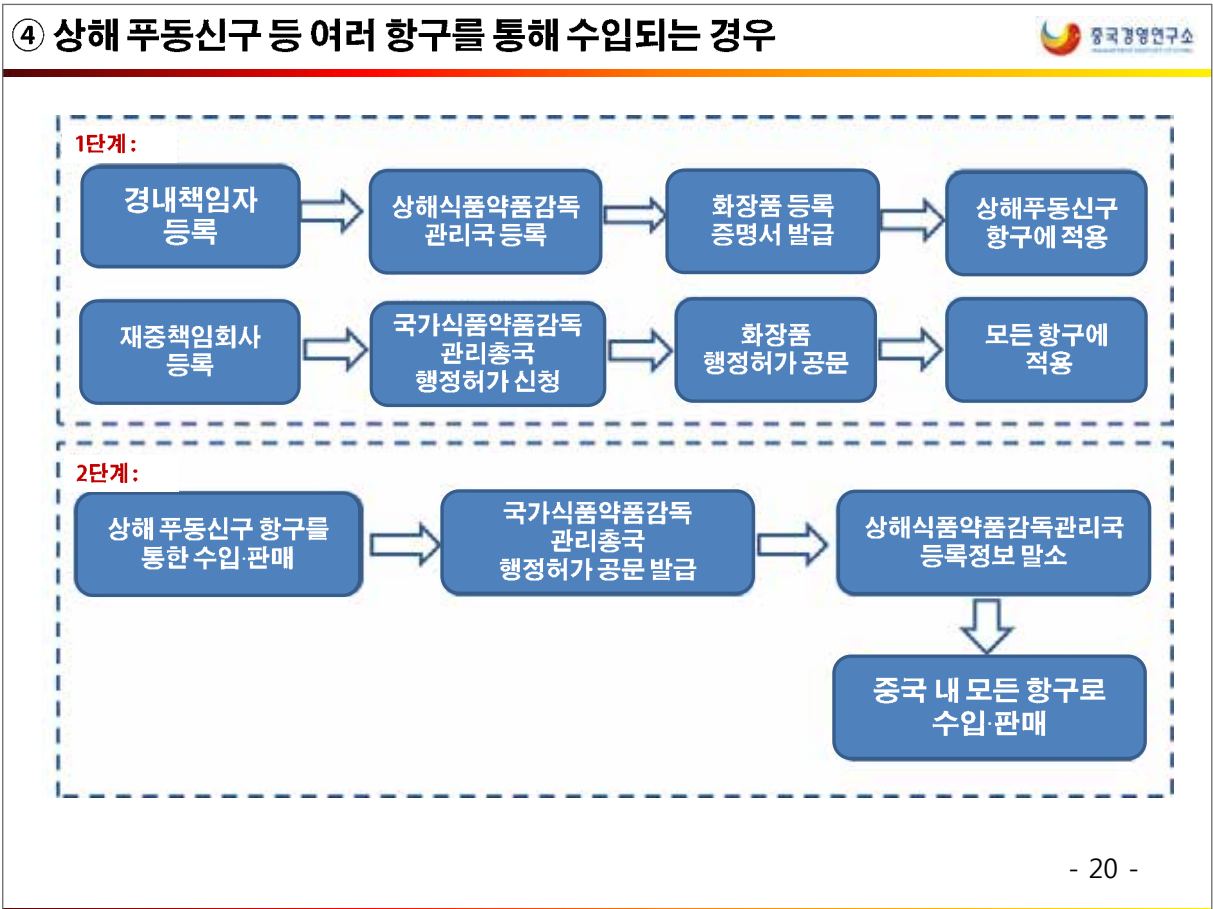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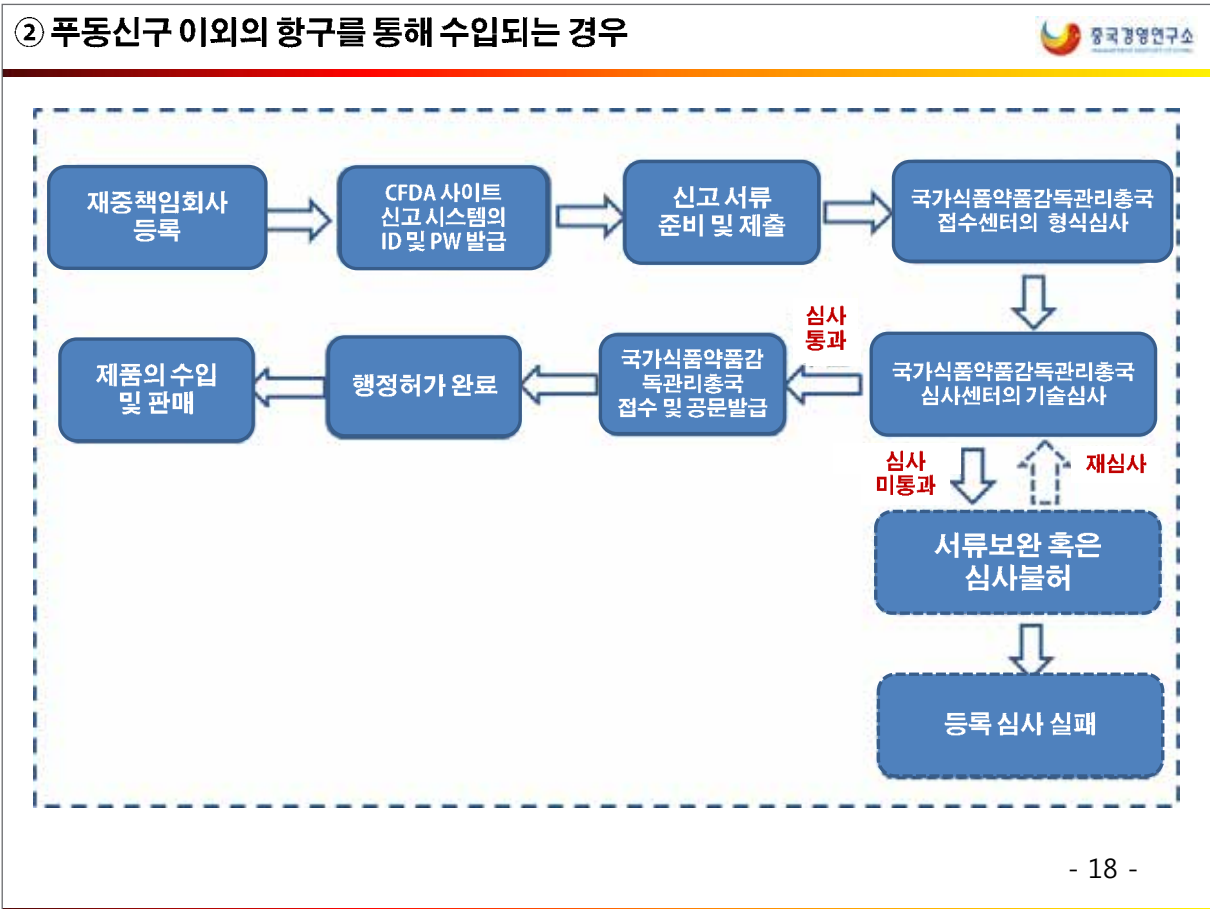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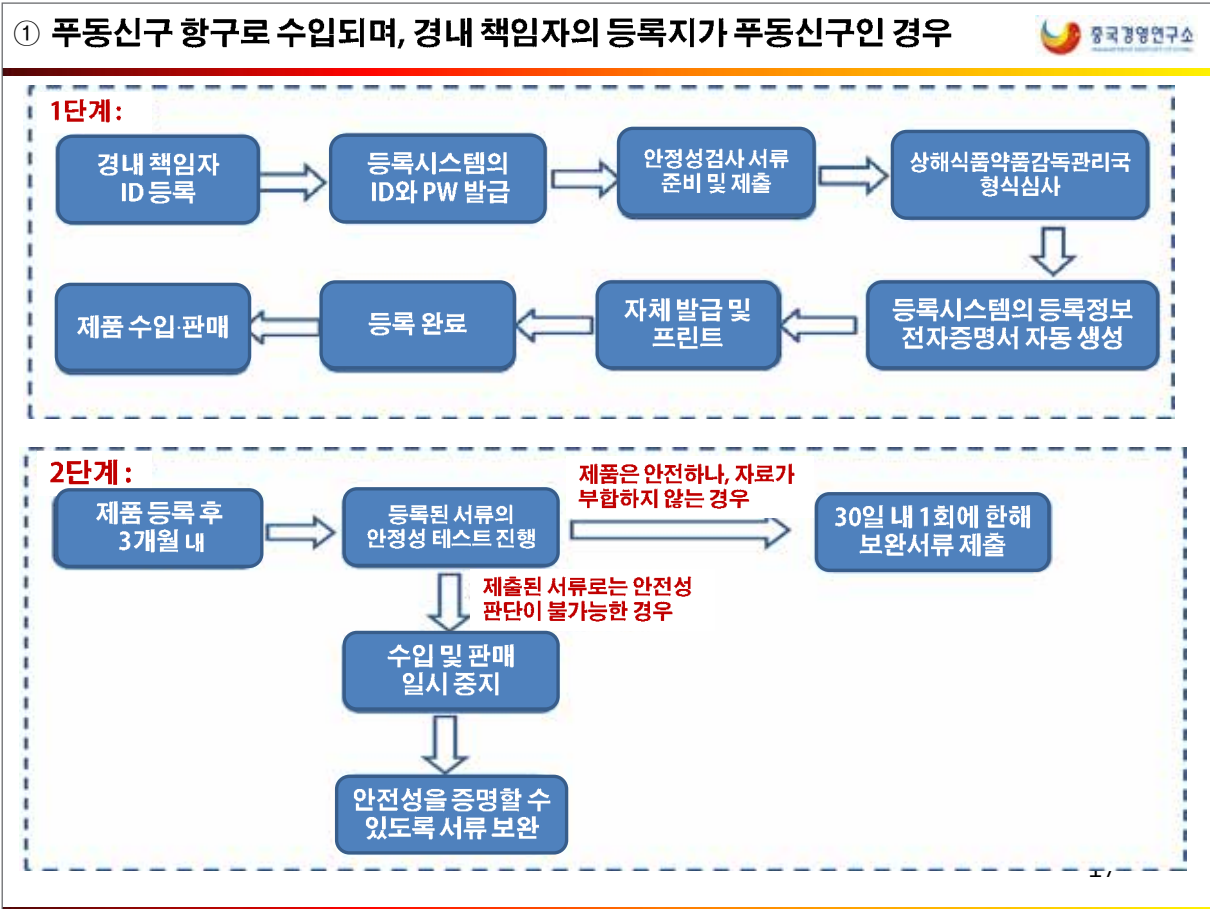
화장품 수입자 등기관리
통관검역검사
화장품라벨심사 및 품질검사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AQSIQ)
-통관, 라벨
심사, 품질심사
등

국가공상
행정관리
총국(SAIC)
-유통 측면

3) 중국 화장품 주요 이슈 - CFDA 없이 수출이 가능한가?





제품유형/수입항구 및 기업에 따른 등록 허가방식 비교 ①				
제품 유형	수입항구	포동신구내 재중책임회사 여부(법인여부)	판매유형	중국시장 진입전 신청방식
수입 비특수 화장품	상해 포동신구	필요	오프라인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통해 등록 신청 진행
수입 비특수 화장품	상해포동신구 혹은 다수 항구	필요 없음	오프라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통해 허가 신청
수입 비특수 화장품	상해포동신구 등 다수 항구	필요	오프라인	○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국(SHFDA) 등록신청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 상해에서 등록 후 상해포동신구 항만을 통해 수입 판매할 수 있음. ○ CFDA 행정신청이 허가되면, SHFDA에 등록된 정보를 취소할 수 있음. 제품은 여전히 상해 포동신구 및 기타 항구를 경유해 수입 판매할 수 있음.
수입 특수화장품	-	-	오프라인	○ CFDA 허가 신청
국산 특수화장품	-	-	오프라인	○CFDA 허가 신청
국산 비특수 화장품	-	-	오프라인	○ 지방 관리국 등록 신청 진행
수입화장품	-	-	온라인	○ 天津、上海、杭州、宁波、郑州、广州、深圳、重庆、 福州、平潭 등 10개 시범 도시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CFDA 없이 허가 가능

최초 비특수 화장품 수입前 진입방식 비교 ②		
항목	국가 감독관리총국 행정허가	상해 관리국 등록
주관부서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CFDA)	上海食品药品监督管理局(SHFDA)
신청 주체 (수권)	국외 신청인은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를 통해 신청	국외신청인은 재중회사를 역내 책임인으로 지정해야 함
재중회사 요구사항	등록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음	반드시 상해 포동신구 내 등록
재중회사 책임사항	단지 제품 행정허가에 대한 책임을 짐	제품의 수입 및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제품품질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됨.
적용범위	전국 각지 항구	상해 포동신구
아이디와 비번으로 신청	국가 감독관리총국 허가 시스템	상해 감독관리국 등록 시스템
아이디와 비번으로 신청자료	-신청표 -수권서 공증 및 번역본 -신청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신청서 -수권서 공증 및 번역본 -역내 책임인 영업집조

최초 비특수 화장품 수입前 진입방식 비교 ③		
항목	국가 감독관리총국 행정 허가	상해 감독관리국 등록
행정허가 및 등록 자료	(1) 신청표 (2) 제품 증문명칭 명명근거 (3) 제품 배합 및 처방 (4) 제품품질 안전관리요구 (5) 제품 원래 포장 (6) 위생부가 인정한 검역기구를 통해 발급된 검역보고서 및 관련 자료 (7) 제품 중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리스크 성분의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8) 이미 등록된 행정허가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 및 영업집조(법인도장 날인) (9)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출처가 광우병 구역이 아니고, High Risk 물질사용 금지 요구에 부합하다는 승낙서 (10) 자유판매 증명서 (11) 평가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12) 생산 공정 설명서와 간략도 (13) 화장품 관련 기술자료의 문자 기술자료 • 원본 1부 제공. • 개봉하지 않은 판매 예정인 화장품 샘플 1개	(1)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표 (온라인으로 기입); (2) 제품 증문명칭 명명근거 (온라인으로 기입); (3) 제품 배합 및 처방(온라인으로 기입); (4)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5) 제품 원래 포장 (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이미지; 중국시장 전용 포장설계도가 있을 경우, 제품 포장 설계도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6) 제조공정도; (7) 제품기술요구; (8) 화장품 행정허가 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9)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의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10)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의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11)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다는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12) 경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관련 증명자료; (13)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 (국식약감허[2009]856호), 이하 《신고접수 규정》 의 요 구를 참조하여,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자료.

최초 비특수 화장품 수입前 진입방식 비교 ④		
항목	국가 감독관리총국 행정 허가	상해 감독관리국 등록
자료형식 심사기구	국가감독관리총국 행정접수센터	上海食品药品监督管理局
기술심사	형식 심사 후 관리총국 보건식품 평가센터를 통해 기술심사 진행	제품 등록 후 3개월 내 진행
허가 및 등록증 생성 과정 및 형식	기술심사 통과 후 행정허가 비준증서 발급	형식심사 통과 후 등록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인쇄할 수 있도록 전자서류 등록정보 증명서류 제공
비준 혹은 등록증빙서류 일련번호 형식	国妆备进字J+4자리 연도 숫자+4자리 일련번호	国妆网备进字(沪)+4자리 연도 숫자+6자리 순서 일련번호
비준 혹은 등록 증빙서류 유효기간	4년	알 수 없음
이미 비준했거나 혹은 등록된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경우	요구하지 않음	경내 책임인 등록된 정보를 말소해야 함

4) 중국 역직구 신통관정책

2017년 5월 11일 시행[1년간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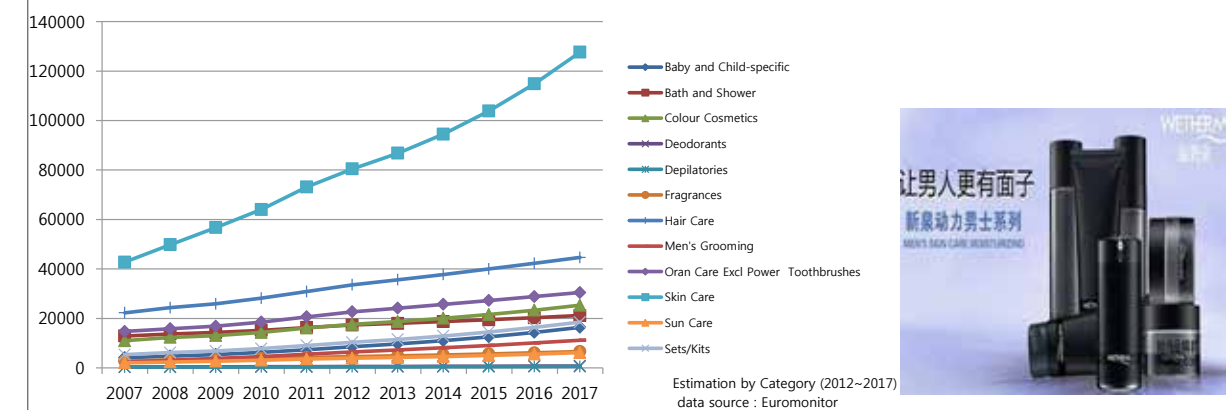
**중국 역직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동부 지역 여성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 중국 Personal Care시장 추이_연평균성장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 **Men 24% > Baby/Children 18% > Skincare 13.5% > Suncare 13.7% > Color Cosmetic 9.9% > Hair Care 8.6%**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 **Baby/Children 13.9% > Men 11.7% > Skincare 9.4% > Color 7.6% > Hair Care 5.8%** 추정



小鲜肉(꽃미남/베이글남) vs 颜值(외모지수)



- 12~30세의 신세대 남성들을 가리키며, 여리고 온순한 성격, 어린 나이와 준수한 용모, 좋은 몸, 순결 무구해 보이는 외모 등이 특징
- '엔' 은 얼굴, 용모, '즈' 는 수치, 즉 **외모지수**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他经济(He Economy)의 급성장



NEW
型男美容学院
全新升级版



중국경영연구소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제도 - 跨境电商示范城市



도시	종합서비스 플랫폼	URL	플랫폼 개요
상해	KIT.COM	www.kit.com	자유무역구 공식 지정 플랫폼
항주	跨境电商	www.kjeport.com	항주세관/절강e-port/절강출입국검사검역국 공동설립
닝보	跨境电商	www.kjb2c.com	닝보시정부/닝보세관/닝보국가검역국/닝보항구 등 공동설립
중경	跨境电商	www.igetmall.net	공식지정된 유일한 플랫폼
정주	E贸易	www.emaoe.com	하남물류보세센터에 설립된 종합 플랫폼
광주	跨境电商	www.kjy.cn	EMS와 합작하여 운영
심천	跨境电商	www.szceb.com	심천시 남방e-port유한공사에서 운영
서안	跨境电商	www.ixbec.com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서안따방시문화산업투자그룹 공동설립
청도	跨境电商	www.qdkjd.cn	과징다E-biz유한공사에서 운영
연태	跨境电商	www.jck315.com	

- 2012년 8월: 상해, 항주, 정주, 닝보, 중경 등 5개 시범지역 선정
- 2013년: 광주 선정, 2014년: 서안, 청도 등 16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행우세력의 변화 전망 (중소기업 대중수출의 기회)

중국경영연구소

중국 역직구 시장 생태계

生产商

零售商: Rakuten, WAL-MART, Sasa.com, LOTTE, emart, METRO, 麦德龙

品牌方: KBO, Sulwhasoo, COACH, HERMÈS

进口零售电商: 京东自营, 天猫国际, 京东全球购, JD Worldwide

物流: 国际物流 (4PX, TIANHUA, WTD), 国内物流 (STO, ZTO, SF), 支持性行业 (保税仓储, WTD)

支付: 支付宝, 微信支付, PayPal, VISA

用户

중국경영연구소

5) 중국 로컬 화장품 기업의 약진



- 한방 천연 뷰티 화장품의 약진
- 중국 로컬기업의 한국기업 M&A
- 중국 화장품 기업의 한국기업 투자 가속화
 - 2006년 0건, 2009년 2건, 2012년 4건
 - 2014년 9건, 2015년 35건
 - 2016년 60여 건

제조 보다는 중국 역수출을 위한 도소매 유통기업 형태이나, 향후 제조까지 포함하는 <화장품 가치사슬>형태로 확대

중국경영연구소

3.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접근법



- 새로운 시장 창출
- FTA 채널의 최적화
- 지역별 맞춤형 접근 노력
- 물리적 대결보다는 화학적 결합이 중요
- 현지화 전략 vs 현지화 경영
- 디자인 침해 대비
- 마케팅 채널의 다변화 (MCN 등 뉴미디어 급성장)
- 스토리텔링의 활용

화장품 중국 비즈니스 주의사항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의 약점

브랜드 파워 미약	→	유통상 및 바이어에게 믿음을 줄만한 브랜드 부재
상품군 부재	→	중대형 유통 채널에 들어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제품 라인
가격 경쟁력 미흡	→	소량생산으로 인한 원가 경쟁력 부족
Manpower 부재	→	1인 다역으로 현지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할 전문성 및 여건이 부족한 실정

거래선 발굴의 어려움

중소기업 내부 역량 및 자원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유아용 스킨케어 시장의 급성장

○ 보령 메디앙스 : 민감성 · 건성 피부전용 브랜드 “닥터아토”

○ 아가방

- 유아용 4중 구조 나노필터 “숨쉬는 마스크(물 대신 천연약용추출물 100% 사용)”
- 영유아용 스킨케어 “퓨토” (천연원료와 안전성을 내세운 유아 피부 개선 제품)

제로투세븐

궁중비책(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면세점 손님의 70% 중국인




중국 수출, 세율적용 체크포인트

중국 수출, 한중 FTA가 답인가?

No!!!!

한국과 중국 연관된 관련 세율 꼼꼼히 체크해서 제대로 활용

- 1. 기본세율(보통세율)**
- 2. 잠정세율**
(매년 말 <잠정세율> 발표, 기본세율보다 30% 낮음
<2016년 수입관세 조정방안>
Ex) 화장품 (한중FTA 혜택 없음, 잠정세율 3분의 1인하)
- 3. 한중FTA APTA(아태 협정)**
2015.12.28
-16년 7월 적용
-평균33%인하
(중국 29% 인하/2,191개 품목)
(한국 28% 인하/2794개 품목)
- 4. 최혜국 세율 or WTO ITA(정보기술협정)**
2015.12.16 확대협상 타결
-16년 7월 적용/23년 완전철폐
-전기기기, 의료기기 등 201개 품목

관세장벽 vs 비관세장벽?



FTA 최적화를 통한 중국시장접근의 다변화

- 서문 및 22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조문은 각 장의 본문 기준 307개 조항
- 협정서 본문 195쪽, 부속서까지 포함할 경우 1,0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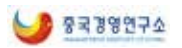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1. 상품(부속서,부록)	7. 서비스(부속서)	12. 지재권	18. 최종규정 및 정의
2. 원산지(부속서)			외
3. 통관 및			쟁해결(부속서)
4. 무역구제			도
5. 위생 및 식물위생	(부속서)	16. 전자상거래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1. 투자(부속서)	17. 경제협력	22. 최종(부속서)

1. 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 철폐
3. 서비스시장 개방

-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 우리 기체결 FTA와 비교 : 한·미 FTA(24개 챕터), 한·EU FTA(15개 챕터)

****헬스케어 시장은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보호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한 분야****

한중 FTA 화장품 협상결과 - 낙관론 vs 비관론



구분		한국(679개 품목)				중국(428개 품목)			
		의약품	의약품기	화장품	합계	의약품	의약품기	화장품	합계
일반 품목	즉시	278	67	2	347	88	27	-	115
	5년	81	17	6	104	178	21	-	199
	10년	144	51	20	215	32	22	1	55
민감 품목	15년	4	2	-	6	22	14	-	36
	20년	4	-	-	4	1	1	-	2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	3	-	-	3	1	2	9	12
	PR-10	-	-	-	-	2	-	-	2
	PR-20	-	-	-	-	1	1	1	2
	PR-35	-	-	-	-	1	1	3	5
합계		514	137	28	679	323	91	14	428

- 대중국 수출의 효자상품인 화장품이 대부분 미양허 또는 부분 감축
- 관세철폐로 인한 추가적인 수출확대 크지 않음
- 반대로,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삼퓨, 계면 활성제 제품 등은 한국측 관세가 최대 10년까지 철폐 됨으로서 지금보다 추가 수입 증대 예상
- 중국의 화장품 관세 양허는 대부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철폐에서 제외
- 기초 화장품 제품류의 경우 부분감축(PR-20) 인하로 합의

- 39 -

한중 FTA 화장품 협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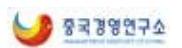


구분		한국(28개 품목 : HSK 10년위)					중국(14개 품목 : HSC 8년위)				
		개수	HS 코드	품명	관세율 (%)	수입액 (천 달러)	개수	HS 코드	품명	관세율 (%)	수입액 (천 달러)
일반 품목	즉시 철폐	2	3307200000	인체탈취제 및 네발한제	6.5	10	-	-	-	-	-
			3307302000	향낭	6.5	12	-	-	-	-	-
			3304301000	네일 에나멜	6.5	259	-	-	-	-	-
	5년 철폐	6	3305100000	샴푸	5	1,436	-	-	-	-	-
			3305901000	헤어 린스	5	287	-	-	-	-	-
			3305902000	헤어크림 등	5	224	-	-	-	-	-
			3303001000	향수	6.5	388	-	-	-	-	-
민감 품목	10년 철폐		3303002000	화장수	6.5	9	-	-	-	-	-
			3304101000	립스틱	6.5	384	-	-	-	-	-
■ 우리측 (28개 품목)						5,985					
- 즉시철폐(2개) : 탈취제·향낭(기존관세 6.5%)						72					
- 5년 철폐(6개) : 네일·샴푸·린스 등(기존관세 5~6.5%)						2,558					
- 10년 철폐(20개) : 기초화장품·메이크업제품(기존관세 5~6.5%) 등						2,784					
						262					
						69					
■ 중국측 (14개 품목)						131,527					
- 10년 철폐(1개) : 인체세정용제품(기존관세 10%)						5,612					
- 양허제외(9개) : 데오도란트·색조화장류·방향용제품(기존관세 10~15%) 등						2,570					
- 부분감축(4개) : 기초화장품 제품(기존관세 6.5%, PR-20) 및											
두발용 제품·목용용 제품(기존관세 6.5~10%, PR-3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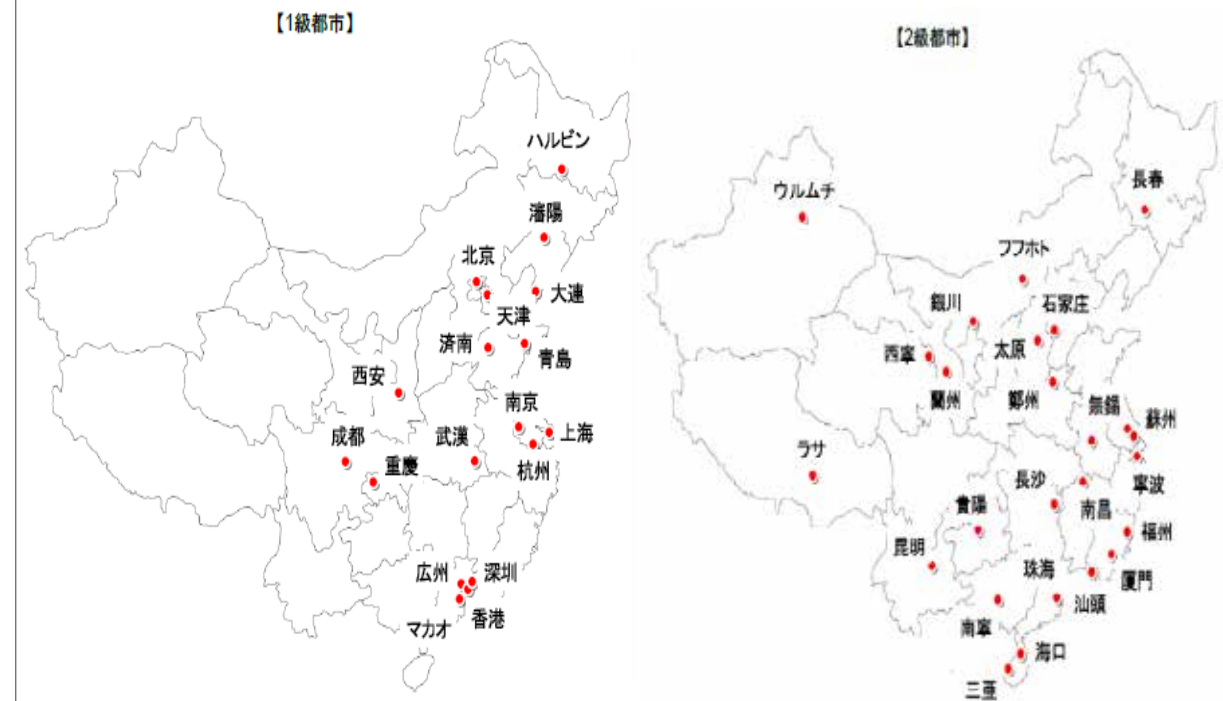
자료: 한-중 FTA

38 -

내륙 지역시장의 성장



맞춤형 지역선정 전략



- 40 -

United State of China – 지역적 특성 가미

중국 프랜차이즈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선정 최적화(지역과 아이템의 수직화)와 업종의 다변화 구축

지역별 미인기준

하얼빈-李冰冰 Li bing bing	대련-董洁 Dong jie	북경-徐静蕾 Xu jing lei	서안-苗圃 Miao pu	상해-周迅 Zhou xun
한주-袁立 Yuan li	남경-梅婷 Mei ting	중경-陶红 Tao hong	타이베이-林心如 Lin xin ru	홍콩-李嘉欣 Li jia xin

디자인 침해 대응 전략

중국 소비자 코드에 맞는 **brand personality(포장과 웰빙)**를 통해 차별적 가치 창출

마스크 팩 (Pre-occupy 노력)

원조가 되지 않으면 복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원조가 짝퉁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

MOT 구축을 통한 중국 소비자 가치증대

여행

출장

사업

중국 시장 사람

마케팅의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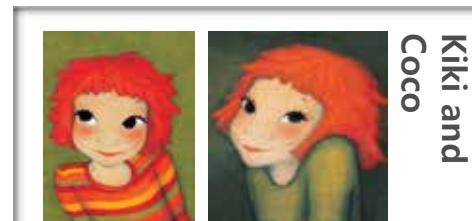
왕흥을 찾는 것도 노하우! 그 기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육심원 사례



□ 색다른 **체험과 Value**를 제공해 고객을 총체적으로 만족시켜라.

상상 속의 주인공



- 생일: 6월 1일
- 성향이 다른 쌍둥이 자매
- 별자리: 쌍둥이자리
- 키키는 행동파 말쑥쟁이
- 혈액형: O
- 코코는 조용한 엉뚱쟁이



53회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 소개



중국 경영연구소 주최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 진행

○ www.chinalab.kr

○ <http://cafe.naver.com/socbchina>



중국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세미나 및 네트워킹

[3월 18일/토요일, 53회 실무 Biz 세미나

“선강릉 활용을 통한 위안화 재테크” I

****매월 3번째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삼성역 코엑스 4층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기업의 대중국 사업 마인드



변증법적 경영 현지화의 도입

○ 중국시장의 변수가 매우 가변적, 취사선택의 어려움, 이익기반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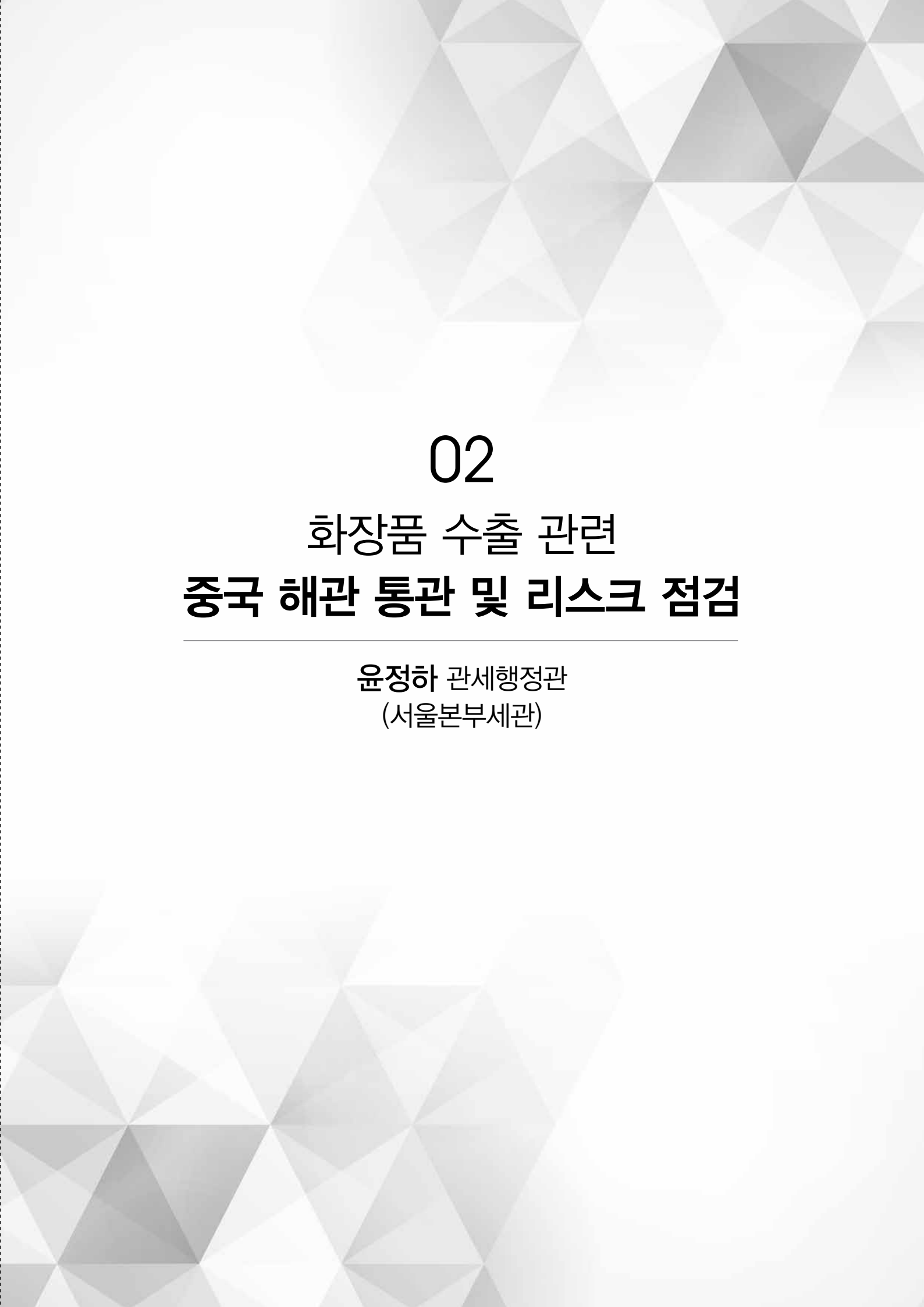
*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중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는 상황”

** 상대적으로 비교해 선택하고 믹스하여 위험 분산하는 사고가 필요

* 좋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은 피하고,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찾는 ‘변증법적 경영 기법’ 활용





02

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 해관 통관 및 리스크 점검

윤정하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해관 통관 및 리스크 점검

2017.3.2

서울세관 윤정하

joyfulnews72@customs.go.kr

CONTENTS

>> I

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기관

>> II

CFDA 위생허가

>> III

화장품 수출신고와 통관흐름도

>> IV

한중FTA협정세율 신청

>> V

해외전자상거래

I.화장품 수출 관련 중국정부기관

CFDA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위생허가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수출입식품,화장품 감독관리

- 31개 출입경검험검역총국

중국해관총서(46,000명)

-수출입물품 관세/내국세 징수와 밀수 단속

-광둥분서 등 46개 직속해관, 562개 산하해관

1/19

II. CFDA 위생허가

□ 법적 근거

-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실시 세칙

- 화장품행정허가신고수리규정

□ 허가대상 화장품 구분

비특수	두발용품		备案
	스킨케어류	로션, 바디클렌저, 아이크림,마스크팩	
	메이크업류	파운데이션,아이라이너, 립스틱	
	손발톱용품	매니큐어, 리무버	
특수	방향제품	향수, 샴푸코롱	行政许可
	발모류 등	모발성장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 침착 경감 제품	
	썬크림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제품(SPF)	
	제모류	체모제거 제품	

2/19

37

II-1. CFDA 행정허가증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进口特殊用途化妆品卫生许可批件

产品名称	中文		
	英文	Solution Extra Tre...	
产品类别	防晒类、祛斑类		
生产企业	中文		
	英文		
生产国(地区)	德国	地址	UN...
在华责任单位	名称		
	地址		
审批结论	经审查:该产品符合《化妆品卫生监督管理条例》的有关规定,准予批准。		
批准文号	国妆特进字J		
批准日期	2010年9月7日		
批件有效期	截至 2014年9月6日		
备注	1. 本产品SPF15。 2. 原产国:泰国。 3.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未组织对本产品声称功效进行审核,本批件不作为对产品声称功效的认可。		

请于批件有效期届满前4个月提出延续申请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凭证

国妆备进字J20...

株式会社:

根据《化妆品卫生监督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对你单位的以下产品予以备案,备案有效期至2012年9月16日。

产品名称	中文		
	英文	MASK	
生产企业	中文	株式会社	
	英文	Co., Ltd.	
生产国(地区)	韩国	地址	
在华责任单位	名称	有限公司	
	地址	山	
备注			

请于批件有效期届满前4个月提出延续申请

国家

备案凭证不作为对产品卫生安全质量的认可。

유효기간 4개월 전에 연장신청

3/19

II-2. CFDA 등록(备案)과 행정허가

-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 ⇒ 授权书작성(재중신고책임회사에 수권)
⇒ 재중책임회사가 CFDA에 ID신청

1. 비특수용화장품 행정허가(备案5~7개월)

(제출서류) 제품중문명, 제품성분표, CFDA가 인증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제품 사용원료 등 11종

2. 특수용 행정허가(行政许可 10~14개월) 제출서류(13종)

(제출서류) 제품중문명, 제품성분표, 제조공정간략도, CFDA가 인증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탈모방지제품등의 효능성분과 이와 관련된 문헌 등 13종

4/19

III. 화장품 수입신고와 통관 흐름도

- 수입자의 1회 신고로 해관과 출입경검험검역국에 동시에 데이터 전송
⇒ 해관과 출입경검험검역국이 검사대상을 공유, 화주는 1회 개장으로 검사완료
⇒ 해관과 출입경검험검역국의 放行(통관)후 화물반출



5/19

III. 화장품 수입신고와 통관 흐름도

- 중국에서 수입시 주의사항

- 모든 수입서류(포장명세서,인보이스,무역계약서 등) 실제화물과 일치
- 수입서류상의 화물의 품명과 실제화물의 품명 일치
- 포장명세서상의 화물 중량과 수량은 선하증권상 및 실제화물과 일치
- 계약서상에는 계약번호가 인보이스상에는 인보이스 번호가 있어야함
- 목재포장에는 소독처리마크표시가 있어야 함
- 수입불허 물품 여부 확인(예: 내용년수 10년 초과된 기계 및 중고의료기기 등)

5/19

Ⅲ. 화장품 수입신고와 통관 흐름도

- 홍바오 수수행위 근절(12-04-02)
 - 해관원의 반부패 깨끗한 관세행정 건설 촉진
 - 홍바오 범위 : 현금, 유가증권, 지불증명, 신용카드, 선물제공 등
 - 대상범위 : 해관원, 해관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친인척, 특정관계인
- ★ 기업피해
 - 동일업체 개인에게 2회 이상 전달시
 - 1회 금액이 5,000위안 이상일 경우
 - 동일장소에서 3명의 해관원에게 전달한 경우
- ☞ 집중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 수출입업무 및 일반업무 감독 관리

5/19

Ⅲ. 화장품 수입신고와 통관 흐름도

- 해관업무 문제발생시 대응
 - 뇌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규 내에서 해결
 -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
 - 숨기기 보다 인정할 것은 빠르게 인정
 - 오해를 초기에 이해 시키려는 노력
 -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준비
 - 해명시 근거자료는 투명한 자료 제시
 - 자료제공의 납기 준수
 - 불필요한 자료 제공 금지
 -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벤치마킹

5/19

Ⅲ. 화장품 수입신고와 통관 흐름도

- 해관업무 문제발생시 대응
 - 해관원별 주관적 견해 차이 이해와 설득
 - 화 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태도
 - 관할지 공관에 도움 요청
- 해관업무 숙지
 - 중국해관법 이해
 - 중국어 무역 및 통관용어
 - 중국해관 콜센터 활용(국번없이 12360)
 - 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활용

5/19

Ⅲ-1. 질검총국 불합격 공고



6/19

Ⅲ-1. 질검총국 불합격 공고

	产地	制造商名称及注册编号	进口商名称及注册编号	重量(千克)	未予准入的事实
伊雅索清爽净肤系列2套装(기초화장품세트)	韩国	IASO CO.,LTD.	东莞市岭南进出口有限公司	19.25	无在有效期内的进口化妆品备案凭证授权使用书(등록증 유효기간 경과)
可可星玫瑰花瓣面膜(마스크팩)	韩国	菲司特玛特有限公司	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	50	申报与实际产品不符, 实际查验产品无法提供进口化妆品备案凭证(등록증의 상품과 실제 상품 불일치)
含雅滋养修护香波(适合烫染后发质)(샴푸)	韩国	希杰狮王株式会社	山东新大东有限公司	825	二恶烷超标(다이옥세인 함량초과)
爱敬可希丝名画沐浴液(滋润型)(바디워시)	韩国	韩国爱敬产业株式会社	威海方正国际合作有限公司	4800	检出防腐剂4-羟基苯甲酸甲酯, 但产品备案凭证的产品配方中无此成分, 该产品配方变更, 未取得相应的备案凭证(등록되지 않은 메틸4-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검출과 성분변경 미등록)

7/19

Ⅲ-2. 중국해관 통관개혁(先통관 後심사)

1.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16.10.30)

(선통관) 상하이, 베이징, 닝보로 수입되는 HS 84,85,90류 물품은 자율신고, 자율납부로 통관 단축

(후심사) 자율신고로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해관은 사후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심사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후심사 조례 수정안('16.7.1)

(시행) 2016년11월1일 시행

(대상) 수출입신고, 수출입 관세와 제세, 수출입허가증 보세화물의 관리, 감면화물 관리 등

9/19

Ⅲ-3. 중국해관 수입신고서(유의사항/로알티)

당사는 중국과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조기술이전관련 경상기술료를 수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세무국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계 및 세무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 계약 현황

주재국	제공기술	경상기술료 산출근거
중국(A지역)	도료 제조기술	기술에 의한 제품매출액의 3%
중국(B지역)	도료 제조기술	기술에 의한 제품매출액의 3%
베트남	도료 제조기술	기술에 의한 제품매출액의 3%

2. 중국 세무국의 경상기술료 관세부과

- 사용료 지급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후 관세 등 추정

- 중국(A지역): 관세부과, 중국(B지역): 과세가능성 높음

* 법률적 근거: <수출입관세조례>제19조'화물을 중국 경내에 판매하는 조

11/19

Ⅲ-3. 중국해관 수입신고서(유의사항/로알티)

□ 권리사용료(Royalties, License fees)

- 무형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213호령, 제51조) 特许权使用费, 是指进口货物的买方为取得知识产权权利人及权利人 有效授权人关于专利权、商标权、专有技术、著作权、分销权或者销售权的 许可或者转让而支付的费用。

□ 과세요건

① 관련성(related to the goods)

-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embodied or incorporated)

- 第十三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特许权使用费, 应当视为与进口货物有关:
(一) 特许权使用费是用于支付专利权或者专有技术使用权, 且进口货物属于 下列情形之一的:
1. 含有专利或者专有技术的;
2. 用专利方法或者专有技术生产的;
3. 为实施专利或者专有技术二专门设计或者制造的

12/19

Ⅲ-3. 중국해관 수입신고서(유의사항/로알티)

② 거래조건(condition of sale)

- 권리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당해 거래가 성립
("권리사용료 지급"과 "수입물품의 구매"가 분리되지 않음)
- 第十四条 买方不支付特许权使用费则不能购得进口货物，或者买方不支付特许权使用费则该货物不能以合同议定的条件成立的，应当视为特许权使用费的支付构成进口货物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条件。
(구매자가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13/19

Ⅲ-3. 중국해관 수입신고서(유의사항/품목분류)



HS	품명	세율	비고
3923.10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포장용기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0%	
4202.32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외부표면을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것	20%	중국해관 주장
4202.92	기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것	10%	업체 주장

한국 관세청 의견 : HS 3923.10

(동건은 현재 WCO 제출 중)

14/19

IV. 한중 FTA협정세율 신청

(중국) 해관총서 제229호령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방법

제17조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수입세관신고서>를 작성, <중한FTA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제18조 수입신고 시 C/O 미 제출시 세금징수 전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관에 보충신고(담보 제공)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협정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

제9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5/19

IV. 한중 FTA협정세율 신청

□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시행일) 2016.12.28

(내 용) 중한 FTA협정세율 신고화물에 대하여 해관은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배 경) 한중 세관간 원산지 전자데이터교환 시스템(EODES)구축으로 무역 편리화 제고

(원산지증명서 보관의무 존재)

* 해관총서공고(2017년 제10호) 참고 (별첨자료)

16/19

V. 해외전자상거래 (Cross border E-Commerce)

해외전자상거래와 직접구매 방식에 따른 세율('16.4.8시행)

1. 해외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1회 거래액 2천RMB, 연간 2만RMB)

① 보세구 방식(B2B2C) ② 국제택배 방식(B2C)

→ 수입가능 물품 : HS 8단위 기준 1,293개

관세 0%, 소비세·증치세액의 70% (징수 최저한 50RMB폐지)

👉 화장품 수입요건 구비를 2017년말까지 유예

2. 중국 해외전자상거래 플랫폼 미사용 (직구, 우편/택배)

→ 개정 행우세(15. 30, 60%)적용(징수 최저한 50RMB 유지)

※ 운송장,거래내역서 등 제출시 국제택배 방식의 세율 적용 가능

3.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휴대반입 (个人代购(개인구매))

→면세한도(5천RMB)초과시 개정 행우세 적용

17/19

<참조> 중국 기업신용등급(海关差别化信用管理)

해관총서 225호령 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성실업체는
업체 편의에 따라,
신용불량기업은
엄격하게 관리

업체 편의에 따라 관리

업체 편의에 따라 관리

항상 규정에 따라 관리

엄격하게 관리

AEO 고급인증기업

AEO 일반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失信企业)

기업신용
상황에
따라
관리

18/19

<참조> 중국 기업신용등급(海关差别化信用管理)

1. 일반인증기업

① 낮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율

② 화물 적하목록 심사 간소화

③ 非AEO 업체 보다 통관수속 우선 처리

2. 고급인증기업*

① 非AEO 업체 보다 물품 검사 및 반출 우선 처리

② 세관의 협조원(AEO 상담관) 전담 배치

③ 가공무역기업은 은행 보증금대장제도 면제

④ AEO 상호인증국가에서 통관편의 제공

* 업체 자체를 신용의 대상으로 보고 은행 보증이나 현금 담보 적용 없음

19/19

<참조> 관세청 (서울세관) FTA 행정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 <http://yes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 수출세율, 수입세율, 세계 HS정보 등 등재

○ 서울세관 : <http://customs.go.kr//seoul>

- FTA 교육, 행사 등 공지

* 각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운영

○ 북경,상해, 홍콩 : 관세관 대련, 천진 : 협력관

19/19

<참조> 관세청 (서울세관) FTA 행정 지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9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전면시행 안내

◇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이 2016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됩니다.

◇ 한중 FTA CO-PASS가 전면시행 되면...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 관련 >

- 종전, 중국해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향후,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시스템 장애로 CO-PASS로 자료가 교환되지 않을 경우, 사후에 협정세율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완신고」 및 담보 제공을 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해관총서 공고 참조)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화물 관련 >

- 한국세관은 종전부터 수입통관 시는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통관 후 협정세율 적용신청 시 의무사항이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12.27)

◇ ‘주의’ 할 것은 CO 보관 의무는 변동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CO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관세청은 CO 자료 교환 여부를 수출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CO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YES FTA 포털/원산지검증/CO-PASS 조회)’를 운영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치로 양국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증명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FTA 활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끝으로 CO-PASS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수출입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 : 원산지 자료교환 관련 해관총서 공고>

海关总署公告2016年第85号
(关于简化中韩自贸协定项下原产地证书提交要求的公告)
发布时间：2016-12-27

为便利《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以下简称《中韩自贸协定》）原产地电子信息交换的实施，简化原产地证书提交，现就有关事宜公告如下：

一、对于申报适用《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的货物，海关不再要求进口货物收货人或其代理人（以下简称“进口人”）在申报进口时提交原产地证书正本。海关认为有必要时，进口人应当补充提交相关原产地证书正本。

二、对于报关单预录入客户端提示不存在原产地证书电子信息情形，进口人应当按照海关总署令第229号的有关规定进行原产地补充申报，申明适用协定税率，并可申请办理有关货物的担保放行手续。

本公告自2016年12月28日起施行。

< 한국어 번역본 >

해관총서공고 2016년 제85호
(중한 FTA하에서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편화 관련 공고)
발표시간 : 2016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약칭)의 편리한 원산지 전자 정보교환 실시와 간편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

1. 해관은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화물 등과 관련하여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자”라 약칭)에게 수입신고 시 더 이상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자는 관련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 신고시 해관 단말기에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해관총서령 제229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산지 「보완신고」를 하여야 하며, 협정세율 적용 신청과 함께 담보 제공 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공고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중국해관 기업분류관리방법】

1.신고단위의 분류

류별	신용도	통관적용 조치
AA류	신용이 매우 우수한 기업	상응한 통관편의
A류	신용이 양호한 기업	
B류	신용이 일반적인 기업	통상적인 관리
C류	신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	엄격한 감시관리
D류	신용이 매우 낮은 기업	
전국세관 통일된 기업분류 실행, 순서에 따른 관리 조치		

2. 수출입업체 및 통관기업관리 규정

AA류

수출입업체	통관기업(통관대행사)
AA류 수출입업체는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1)A류 관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미 A류 관리업체로서 1년이상 일 것. (2)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3%이하일 것. (3)세관심사검증, 세관관리, 기업경영 관리 및 무역안전요구에 적합할 것. (4)《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와 회계사무소의 1년회계심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단 《수출입업무 현황표》는 매 반기별로 보고할 것.	AA류 통관기업은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1)A류 관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미 A류 관리업체로서 1년이상 일 것. (2)지난 1년간 수출입대리신고서와 입출경신고명세서가 총량 2만표 이상일 것(중서부는 5,000표) (3)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3%이하일 것. (4)세관심사검증,세관관리,기업경영 관리 및 무역안전요구에 적합할 것. (5)《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와 회계사무소의 1년회계심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단 《수출입대리업무 현황표》는 매 반기별로 보고할 것.

A류	
수출입업체	통관기업(통관대행사)
A류 수출입업체는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1)이미 B류 관리가 된지 1년 이상 일 것. (2)연속 1년동안 밀수죄, 밀수행위 및 세관법규에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3)연속 1년동안 지식재산권침해 수출입을 하거나 이로 인해 세관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 (4)연속 1년간 세관의 세금이나 상응하는 벌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5)지난 1년간 수출입총액이 50만\$ 이상일 것. (6)지난 1년간 수출입 신고서오차율이 5%이하일 것. (7)회계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업무 기록이 진실하여 믿을 수 있을 것. (8)스스로 세관관리에 협조하고, 적시에 각종 세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 제출하는 영수증, 증거서류가 진실되고 완전히 갖추어지고 유효할 것. (9)《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10)《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 송수화인신고등록증서》를 규정에 따라 갱신수속과 변경수속을 할 것. (11)연속 1년간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관리 부문과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을 것.	A류 통관기업은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이미 B류 관리가 된지 1년 이상일 것. (2)기업이나 소속 통관업무 종사자가 연속 1년동안 밀수죄, 밀수행위 및 세관법규에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3)연속 1년동안 대리 신고한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세관에 몰수 되지 않을 것. 다만 몰수를 당한 사실이 있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상황을 합리적으로 심사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예외로 함. (4)연속 1년간 세관의 세금이나 상응하는 벌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5)지난 1년간 수출입 대리신고서와 입출경신고명세서가 총량3,000표 이상일 것 (6)지난 1년간 대리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5%이하일 것. (7)법에 근거하여 장부와 영업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실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위탁신고업무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여야 함. (8)《기업관리경영상황평가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9)규정에 따라 신고등록허가 연장을 해야하며,《중화인민공화국세관통관 기업신고등록증서》를 갱신수속과 변경수속을 할 것 (10)연속 1년간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 관리부문과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을 것

B류	
수출입업체	통관기업(통관대행사)
수출입업체가 C류와 D류의 상황이 미발생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중에 하나일 때 B류를 적용함.	통관기업이 C류와 D류의 상황이 미발생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중에 하나일 때 B류를 적용함.
(1)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경우.	(1)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경우.
(2)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후,관리 류별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후,관리 류별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AA류 기업이 원래 관리 류별에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A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3)AA류 기업이 원래 관리류별에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A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4)A류기업이 원래 관리류별에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4)A류기업이 원래 관리류별에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C류	
수출입업체	통관기업(통관대행사)
수출입업체가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C류 관리를 적용함. (1)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2)1년 내에 3회이상 세관법규 위반 행위가 있거나, 법규위반 횟수가 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와 입출국 기록보고서 표수의 1%초과하거나, 또는 1년내 세관법규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벌금누계 총액이 인민폐 100만원 이상인 경우 (3)1년내에 수출입으로 인해 지식상품권 화물을 2차례 침해했거나 이로 인해 세관에 행정처벌받은 경우. (4)세관의 세금채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50만원이하인 경우.	통관기업이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C류 관리를 적용함. (1)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2)1년 내에 3회이상 세관법규 위반 행위가 있거나, 1년내 세관법규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벌금누계 총액이 인민폐 50만원 이상인 경우. (3)1년 내에 대리신고한 화물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세관에 몰수가 2차례에 달하고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4)지난 년도 대리 신고한 수출입 신고서 오차율이 10% 이상인 경우. (5)세관의 세금채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50만원이하인 경우. (6)대리 통관신청한 화물이 밀수혐의나, 세관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세관조사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거부한 경우. (7)세관으로 부터 세관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 정지된 경우.

D류	
수출입업체	통관기업(통관대행사)
수출입업체가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되면 D류로 관리함. (1)밀수행위가 있을 때. (2)1년내 2차례이상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3)1년내에 3차례 이상 수출입으로 인해 지식재산권화물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해 세관에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세관의 세금채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50만원이상인 경우.	통관기업이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면 D류로 관리함. (1)밀수행위가 있을 때. (2)1년내 2차례 이상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3)1년 내에 대리신고한 화물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세관에 3회이상 몰수가 되거나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4)세관의 세금채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50만원이상인 경우.
★세관의 가공기업 등기에 있어서도 수출입업체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관리함.	
3. 신고단위 분류관리조치의 실시	
(1).AA류 혹은 A류 기업이 밀수와 관련되어 수사 혹은 조사를 받거나 세관에서 상응한 관리류별 관리조치를 잠정 중단 한 경우, 중단기간 내에는 B류기업의 관리조치에 따라 관리를 진행함.	
(2).기업명칭 혹은 세관등록코드에만 변화가 발생 했을 경우 그 관리 유형은 계속하여 적용되며, 다만 아래 상황에 해당 할 경우 아래 방식에 따라 조정을 진행함.	
①기업이 존속분할 될 경우, 분할 후 존속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책임과 의무 혹은 채권채무 관계를 승계 했을 경우 그 관리 유형은 분할 전 기업의 관리유형을 적용하며 그 나머지 분할 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②기업이 해산 될 경우 해산 된 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③기업이 인수합병 될 경우, 합병기업 관리유형은 합병 후 존속기업의 관리유형을 적용함.	
④기업이 신설합병이 될 경우 합병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3).통관기업이 수출입업체를 대행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할 때 세관에서는 통관기업과 수출입업체가 각자 적용하는 관리류형에 따라 상응 하는 관리조치를 실시함. 기업의 관리류형이 서로 다르므로 인해 실시하는 관리조치가 서로 저촉이 될 경우 세관에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실시함. ①통관기업 혹은 수출입업체가 C류 혹은 D류인 경우 낮은 관리 류형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②통관기업과 수출입업체 모두 B류 혹은 그 이상인 관리 류형인 경우 통관기업의 관리유형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4).가공무역경영기업과 위탁가공을 받은 생산기업의 관리 류형이 서로 다를 경우 세관에서는 동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낮은 기준의 관리 류형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5).세관관리지역을 초월하여 지사가 설치 된 통관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류형을 적용 혹은 조절할 때 수출입화물통관신청서와 수출입 신고서의 수량, 신고오차율,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채납액과 상응하게 납부해야 하는 벌금 등 동 통관회사와 각 지사의 합에 근거하여 계산함. 세관관리지역을 초월한 지사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 행정 및 세금채납, 상응하게 납부해야 할 벌금 등 법률적인 결과를 초래 했을 경우 기업 관리 류형을 조절 할 때 동지사와 지사를 설립한 통관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기타 지역의 지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4. 관리 류별 신청 조정
(1). C류 기업이 세관에 B류 조정 신청 전 만 1년동안 C류 관리 조건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는 B류로 조정 가능.
(2). D류 기업이 세관에 C류 조정 신청 전 만 1년동안 D류 관리 조건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는 C류로 조정 가능.

참고

관련 해관총서 공고(2017년 제10호)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10호
아태무역협정(APTA) 하 중한원산지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업무 개시 공고

1. 《아태무역협정》적용 대상 수출입 화물의 통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부터 “APTA 중한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고, 이 협정 하의 중한 양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정보를 전송한다.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가. 수입 화물 수하인 및 대리인 (이하 “수입자”)은 APTA 협정 적용 대상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물의 수입신고 시 <해관총서 2016년 제51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신고서” 또는 “중화인공화국 해관반입화물 등록신청서”(이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2017년 2월 8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부터 수입자가 APTA 적용 대상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물의 수입신고 시 :

1) 해관이 이미 받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와 수입 신고내용과 일치한 경우
해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해관이 받은 원산지 전자자료와 수입 신고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 요청한다.

3) 2017년 5월 10일 까지는 해관에서 원산지증명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원산지증서 원본을 제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2017년 5월 11일부터는 해관에서 원산지증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해관총서령 제18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 보충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정세율 적용 의사표시를 하고 담보 제공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 APTA 협정 적용 컨테이너 화물(원산지: 한국) 관련, 해관이 이미 관련 원산지 증명 전자정보를 받았고, 수입자가 관련화물의 컨테이너 번호와 쉘 번호가 운송과정중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송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관은 직접운송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해관총서 2017. 2. 4일

【중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 주정 12도 이상 1.5리터이하 면세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0.75리터이하)면세 ※ 당일 왕복 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면세 없음	
담배	○ 쥘련(cigarette) 400개피, 엽쥘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래 여행자 : 쥘련(cigarette) 200개피, 엽쥘련(cigar) 50개피, 씹는 담배 250g ※ 당일 왕복 등 단기간 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쥘련(cigarette) 40개피, 엽쥘련(cigar) 5개피, 씹는 담배 40g	
향수	○ 별도 기준 없음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시 세율: 품목별 10~50%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외국환신고	○ USD 5,000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	※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시 유의사항 -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중국 외환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벌금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 개월이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의약품	○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및 마카 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음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식품	○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진공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 사용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내에는 면세 통관 허용될 수 있음)	
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	○면세통관 :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의 경우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 1인당 10권 이하 - CD, DVD 음향제품 : 1인당 20개 이하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3세트 이하 - ○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 사용으로서 합리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과세통관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 1인당 50권 초과 - CD, DVD 등 음향제품 : 1인당 100개 초과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10세트 초과	
반입불허품목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 물품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식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기타 유의사항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중국세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외교관 등 면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통로(적색통로)를 이용 ○ 중국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에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 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없는 경우 벌금과세 후 통관 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일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 ○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03

중국 화장품 시장 변화 및 대응 방안

김형열 대표이사
(중국한아(항주)화장품)

ANYA

중국 화장품 시장 변화 및 대응 방안

- 1 최근 중국내 한국화장품 관련 현지 상황
- 2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 및 추세
- 3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중요 사항
- 4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및 매출 증진 방법
- 5 매출 증진 중요 사항

발표자: 한아화장품 대표 김형열

일 시: 2017.3.2

〈화장품 유통별 거점 지역 선정 참고〉

- 1)백화점: 상해/ 북경 /심천/광주
- 2)전문점:
절강성,강소성,산둥성,사천성,하남성
- 3)마트 : 상해/ 북경/ 광주
- 4)온라인: 항주(티몰)/ 북경/광주
- 5)단독브랜드샵: 상해/북경/심천/중경
- 6)해외직구(보세구): 북경/정주/항주/상해
- 7)웨이상 : 광주 지역 강함/전국적 확장 단계

1 최근 중국내 한국화장품 관련 현지 상황

- 1)TV 광고 및 온라인 광고, TV 홈쇼핑 제약
- 2)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 취득 정상
- 3)중국 세관 통관 정상(개별적 상황 존재)
- 4)한국 모델 오프라인 행사 진행 가능

2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 및 추세

- 1)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온라인,가성비)
- 2)화장품 판매 유통 채널의 다양화
 - 중국 2500개 대형 쇼핑몰 강세
 - 온라인 판매 강세(채널 다양화+해외 직구)
 - 13만개 종합화장품 전문점 :춘추 전국 시대
 - 단독 브랜드샵 증가세(중국 로컬 회사 본격 진입)

2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 및 추세 II

- 3) 기초화장품 관세인하(5%→2%:2016.6.1실행)
- 4) 색조화장품 30% 소비세 조정(폐지 의미)
- 5) 중국 화장품 산업단지 집중 육성(절강성 호주시)
: 세계 최대 화장품 복합 산업단지
- 6) 중국 회사: 한국 화장품 신제품 트렌드 벤칭마킹
- 7) 微信(APP:wechat) 강력한 판매, 마케팅 수단

3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중요 사항 II

- 1) 브랜드 상표 등록(영문/중문), 의장 등록
- 2)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 신청 및 취득
- 3) 중국, 중국인, 중국어에 대한 사전 학습
- 4) 비정상적 수출의 한계성 극복/중장기 계획 수립
- 5) 현장은 중국 !! 권한 위임. 빠른 대응력

3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중요 사항 I

- 1) 판매 채널 명확
- 2) 판매 가격 및 공급가 결정
- 3) 핵심 타겟
(우선 지역 대리상 확보가 먼저/파트너)
- 4) 생존 단계 → 확장 단계 → 성장 단계
- 5) 히트 전략 상품 1개
- 6) 마케팅 속도 조절: 100km → 60km

4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및 매출 증진 방법

핵심 문제: 거래처 확보 및 확장이 힘들다!!

- 1)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증 확보!!
- 기초화장품: 30품목 이상/색조화장품 100품목
- 2) 微信 (APP:WECHAT) 활용
- 3) 중국내 화장품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 4) 각 지역 화장품 체인점 직거래
- 5) 색조화장품 진입 최적의 기회

▶ 매출 증진 중요 사항

- 1)중국 수출가 산정: 소비자가격의 경쟁력 확보
- 2)유통별 공급가 산정시 충분한 협의
- 3)소비자 체험에 집중(테스트 제품 지원)
- 4)판매 사원 테스트 제품 제공이 곧 홍보
- 5)1개의 히트 제품에 집중!

우리 한국 기업에게 중국은?

- 아직도 늦지 않았다.
- 중국,중국인을 존중하고 더욱 가까이 하자
- 회사 성장의 시작은 우리 회사 직원부터
- 가장 큰 경쟁력: 우리 제품에 대한 근성
- 2023년 중국 중산층 1억명
- 귀로 중국을 이해하지 말고 직접 오감 체험으로
- 현장이 답이다.

출발점:

중국인을 진심으로 존중하자!

한아화장품 대표 김형열

E-mail: hengliq@hahat-mall.com

M.P : +86-188 5810 2435

MEMO

MEMO

MEMO

MEMO

MEMO



화장품 중국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

Kcii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Foundation of Korea Cosmetic Industry Institute

(18103)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가장동)
Tel. 031-8055-8754 / Fax. 031-372-3846 / www.kcii.re.kr